

# 강원관광대학 부설연구소 설치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의 부설연구소의 설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8.02.11.)

제 2 조 (적용범위) 부설연구소의 설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, 학칙 기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규정에 따른다.(개정 2008.02.11.)

제 3 조 (설치 및 폐지) ① 부설연구소를 설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5인 이상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을 거쳐 학장에게 신청하여야하며, 설치 및 폐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. (개정 2008.02.11.)

1. 설립취지서
2. 규정안
3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
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명칭 : 이 연구소는 강원관광대학 부설 ( )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라 칭한다.
2. 목적 : 연구소는 학술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3. 소재지 : 연구소는 강원관광대학 내에 둔다.
4.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(1) 연구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
  - (2) 연구자료의 수집
  - (3)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
  - (4) 연구자료의 간행(학술연구발표회 및 연구논문집 발간)
  - (5)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대 사업
5. 조직에 관한 사항
6.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
7. 각 연구원 및 연구조교에 관한 사항
8. 재정에 관한 사항
9.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10. 기타.

제 4 조 (운영의 독립성) 부설연구소는 우리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써 독립운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.(개정 2008.02.11.)

## 제 2 장 조 직

제 5 조 (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둔다.

② 소장은 전임교수인 연구위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,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제 6 조 (간사) ① 연구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학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업무를 집행한다.

제 7 조 (연구위원)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의 연구활동과 부합하는 전공을 가진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학장이 위촉한다.

② 연구위원은 임기를 두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해촉할 수 있으며 연구위원이 본 대학에서 퇴직한 때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③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, 소장의 허락을 얻어 연구소 연구위원회의 자격으로 외부과제의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.

제 8 조 (조교) ① 연구소에 조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.

② 조교는 소장이 제청하여 학장이 임명한다.

③ 조교는 소장과 간사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회의 연구활동을 보조한다.

제 9 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1. 사업계획
2.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
3. 연구비 배정
4. 기타 주요 사항

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간사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.

## 제 3 장 연구과제 및 배정

제 10 조 (종류)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
1. 내부과제 : 연구비가 학장에 의해 지급되거나 또는 학장을 경유하여 지급되며, 연구 수행자를 학장이 결정하여야 할 과제
2. 외부과제 : 연구비가 외부 기관에서 지급되며, 연구 수행자를 연구비 지급 기관에서 지정한 과제로서 연구비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급되어야 할 과제

(개정 2008.02.11.)

제 11 조 (배정원칙) ① 외부과제는 연구비 지급 기관이 지정한 연구위원이 수행한다.

② 내부과제는 연구과제의 성질상 또는 연구비 지급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의하여 연구 수행자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이러한 원칙이 없거나 이에 의하여 지정할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한다.

1. 과거 내부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연구위원에게 우선 배정하며, 이에 해당되는 위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본 대학의 부임순으로 배정한다.
2. 제 1호에 따라 배정하고 남은 과제는 연구위원 각자가 가장 최근에 수행한 연구과제의 수행연도를 비교하여 배정일 현재 가장 오래된 연구위원에게 배정한다

제 12 조 (배정절차) 연구과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이를 배정한다.

## 제 4 장 재 정

제 13 조 (경비)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.

1. 대학의 연구보조금
2. 사업 수입금
3. 기부금 또는 찬조금
4. 기타

제 14 조 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준하여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15 조 (사업보고) 연구소의 소장은 매 학년말에 학장에게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